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유인촌

● 법률 제9529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 중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장제3절에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23조제1항 중 “제76조·제82조 및 제83조”를 “제76조·제76조의2·제82조·제83조 및 제83조의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5. “외국간행물”이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온라인 자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복제근거를 마련하고,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작권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유인촌

●법률 제9530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